

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228
----------	------

2020년 3월 6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자 : 김용석 의원 외 11명
- 나. 제안일 : 2019년 12월 17일
- 다. 회부일 : 2020년 1월 13일
- 라. 상정일 : 제29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2020년 2월 28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용석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 결산검사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성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특정 성별이 검사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(안 제3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입법예고(2020.1.16. ~ 1. 23.) : 의견 없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-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특정 성별이 검사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위원 구성에 성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3항 단서 추가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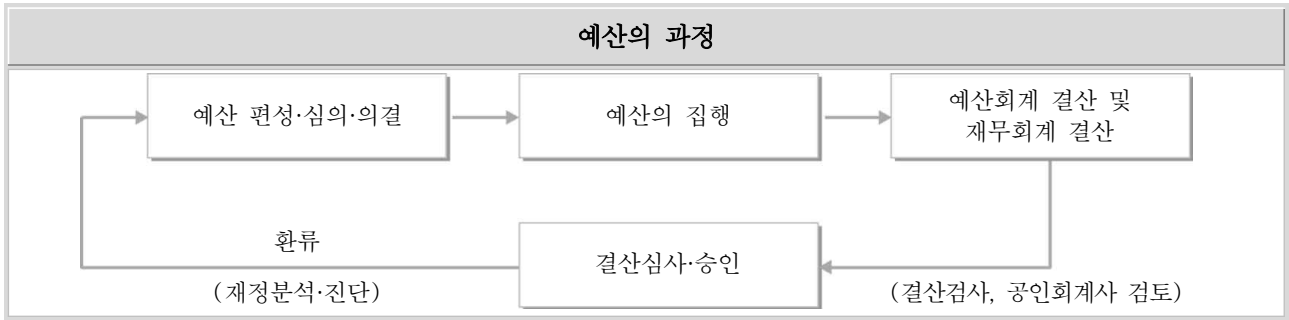
< 신·구조문 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자격 및 선임방법) ①·② (생략)	제3조(자격 및 선임방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4조에 따른다. <후단 신설>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이 경우 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검사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④·⑤ (생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
※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·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(제1조).

※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, 예산과의 괴리정도,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.

※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세입예산, 징수, 수납, 세출예산, 예산배정 및 원인행위,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(세입세출결산)과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·부채, 수익·비용 등을 기록 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(재무제표)으로 이원화되어 있음.



※ 결산심사·승인은 심의·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임.

※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(참고2 참조)를 살펴보면, 세입 38조 1,121억원 및 세출 34조 3,355억원 등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비효율, 집행잔액 과다, 보조금 정산 미흡, 세외수입 징수 미흡 등 지적사항을 도출하고, 계약업무 개선, 기금 운영 내실화,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개선 등 총 81건의 시정권고가 이루어 졌음.

< 시정권고사항 : 81건(예산운용 53, 세입 12, 업무개선 12, 성과지표 2, 기타 2) >

구분	권고사항	건수	구분	권고사항	건수
합 계			81건		
예산 운용	예산편성 미흡	13	세입 분야	세외수입 징수 미흡	9
	효율적 예산집행 미흡	11		세입과목 오류 등 기타	3
	불용예산 과다	10	업무 개선	계약업무 개선	3
	예산집행절차 부적절	6		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개선	2
	보조금 등 정산 미흡	6		기금운영 내실화 미흡 등	7
	사고이월 과다	4	성과	성과지표 설정 미흡 등	2
	예비비 집행절차 미흡	3	기타	건설중인자산 회계처리 미흡 등	2

○ 현행 조례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10명으로 하고(제2조), 서울 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 의결 방법(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)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(제 3조).

※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(의결정족수)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 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,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- 안 제3조 후단 규정 신설은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서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외에는 위원회 위촉직 위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(제21조제2항)한 사안을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
「양성평등기본법」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 위원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, 여성 점유율이 매년 10.0% 수준에 그치고 있는바, 「양성평등기본법」의 취지를 감안할 때,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(참고3 참조).

< 최근 5년간 결산검사 위원 구성 현황 >

회계연도	합계	남성 위원수	여성 위원수	여성 비율(%)
2018회계	10	9	1	10.0
2017회계	10	9	1	10.0
2016회계	10	9	1	10.0
2015회계	10	9	1	10.0
2014회계	10	10	0	0

「양성평등기본법」

제1조(목적) 이 법은 「대한민국헌법」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이념)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,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양성평등"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, 편견,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.
2. "성희롱"이란 업무, 고용,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단체(이하 "국가기관등"이라 한다)의 종사자,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가.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
 - 나.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
3. "사용자"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,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
- 다만, 결산검사위원회는 신분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,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와 관련한 자료요구권이나 조사 권한을 수행하는 등,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바, 「양성평등기본법」(제21조 제3항)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한 사안을 본 개정안에 차용하는 것이 합당한지, 의장의 추천 권한에 대한 제약은 없는지, '부득이한 사유'에 대한 범위 규정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.

< 결산검사위원의 성격 >

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바,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. <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-1948(2008.12.17.)>

「지방회계법」

제14조(결산의 수행)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의회,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84조(결산 검사 사항)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※ 출처: 「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」 59페이지,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매뉴얼 (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-1425, 2018.3.27.) 7페이지.

- 또한,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(참고4 참조)을 보면, 위원 10명 중 여성 위원 수가 3명으로 제출(2020.2.6.)되어 성비가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바, 효과적인 결산검사 수행 및 위원 성비 개선을 위한 인력풀 마련에 면밀한 대응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
※ 위원의 자격(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): 의원, 공인회계사·세무사, 예산·결산 업무 경험 5급이상 공무원, 공공기관 등에서 검사·감사직 3년 이상 경력자, 시민단체 추천자 중 재무관리 3년 이상 경험자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.

6. 토 론 요 지 : 없 음.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10명, 전원찬성).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.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용석 의원 대표 발의)

발의연월일: 2019년 12월 17일

발 의 자: 김용석, 이병도, 성흠제,
이광호, 채유미, 문장길,
노승재, 채인목, 정진철,
김종무, 장상기, 추승우
의원 (12명)

의안 번호	1228
----------	------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성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특정 성별이 검사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(안 제3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해당사항 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검사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자격 및 선임방법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4조에 따른다. <후단 신설></p> <p>④·⑤ (생략)</p>	<p>제3조(자격 및 선임방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이 경우 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검사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